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7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김한규·양부남·장철민

박희승 • 박상혁 • 최기상

서미화 · 문대림 · 문정복

강유정 • 이건태 • 박정현

박홍배·백혜련·위성곤

박민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 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2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		
	통비 지원. 다만,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		
	<u>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